

독일 개정개인신분법의 주요내용 분석

안 경 희 (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1. 머리말

독일에서는 2007년 2월에 개인신분법이 개정되었다. 물론 1937년에 동법이 제정된 이래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개정은 1984년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1984년 당시에 개정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인구조사법판결¹⁾이었다. 동 판결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상정보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고, 문제가 된 그 정보들의 대부분은 바로 개인신분법상 등록사항인 개인신분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이들에 관한 등록문제를 다루는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에 1984년에 연방

과 주에 개인신분법 개정 준비를 위한 연구회가 구성되었고, 이 연구회에서 1996년에 예비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통일과 그에 수반하는 법의 개정이 국가의 최우선과제였던 바, 개인신분법 개정위원회 활동은 가족법 기타 독일통일관련법규들과 관련된 개인신분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고, 본래 의도했던 개인신분법 자체의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예비초안이 2007년 개정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7년 개인신분법 개정안은—그 입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996년 예비초안의 기본컨셉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런 의미에서 2007년 개정법의 주요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1) BVerfGE 64, 67 : 동 판결에서는 1982년 3월 25일의 인구, 직업, 주택, 직장수 조사에 관한 법률(인구조사법 1983 : BGBl. I, S. 369)에 따라서 1983년 4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인구, 직업, 주택, 직장에 관한 총조사가 헌법상 기본권들, 특히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이른바 인구센서스의 항목에는 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가족상황, 국적, 주거생활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구조사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통계목적에 위한 인구조사와 그 조사결과와의 결합을 규정하고 있었다. 동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이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무제한적인 조사, 저장, 이용 등으로부터 개인이 보호될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인은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과의 연관 하에 동법 제2조 제1항의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자신의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BT-Drucksache, 16/1831, S. 33 (Amtliche Begründung A I 3 b).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신분대장에의 등록사항을 축소하고, 대장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재정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대체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새로이 신설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2007년 개정법의 주요내용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법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개인신분법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I. 독일개인신분법의 역사적 발전

1. 교회에서 국가로 신분등록사무의 이관

16세기 이래 독일에서는 교회의 종교부인 세례부, 혼인부 그리고 사망부가 실질적으로 개인신분을 등록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신분등록과 관련된 국가의 사무는 신구교의 사제들에 의하여 작성된 종교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법의 영향으로³⁾ 프로이센에서 1874년 3월 9일의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인 민사혼제도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신분공무원에 의한 신분등록제도가 법정되었고,⁴⁾ 1875년 2월

6일에 제정된 “신분의 공증과 혼인체결에 관한 제국법률(Reichsgesetz über die Beurkundung des Personenstandes und über die Eheschließung)”이 동법을 수용함으로써⁵⁾ 독일제국 전체에 근대적인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상의 서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교회로부터 국가로 신분등록사무를 이관해 오는 것이 국가의 지상과제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1875년의 제국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이러한 사무를 이제 국가가 관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신분등록사무를 둘러싼 국가와 교회와의 투쟁이 국가의 승리로 일단락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독일의 개인신분법에는 2007년 개정법에서 까지도 교회관련조문들이 많이 등장한다.

2. 개인신분법의 제정과 개정

1937년 11월 3일에-현행법과 같은 명칭을 가진-개인신분법(Personenstandsgesetz)이 제정되었다.⁶⁾ 동법은 전술한 제국법률과 명칭은 다르지만 개인신분의 공증 등을 규율한다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생각건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의무적인 민사혼의 원칙과 국가에 의한 개인신분등록의 원칙이 자리를 잡았는바, 이제 더 이상 제국법률에서와 같은

3) 유럽에서는 1789년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신분등록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자는 사교가 처음으로 현실화되었다. 1792년 9월 20일의 법률에서 의무적인 민사혼, 민사신분대장 그리고 신분공무원 등이 법정되었고, 동규정들이 그대로 프랑스민법(1804)에 수용되었다: Schütze, Wolfgang, 100 Jahre Standesämter in Deutschland, Frankfurt/Main, 1977, S. 15; Sturm, Fritz, Ein Wendepunkt in der europäischen Rechtsgeschichte: Das französische Personenstandsgesetz vom 20. September 1792, StAZ 2007, 1 ff.

4) Schütze, a.a.O., S. 21 ff.

5) Reichsgesetz über die Beurkundung des Personenstandes und über die Eheschließung vom 6.2.1875 (RGBl. S. 23). 동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 혼인과 사망사건의 공증은 단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신분공무원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지정된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행해진다.”

6) Personenstandsgesetz (PStG) vom 3.11.1937 (RGBl. I, S. 1146).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개인신분법이라는 일반적인 법률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동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⁷⁾ 주로 관련법규들의 제·개정에 따라 일부조문들이 개정되는 정도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개인신분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2007년 개정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신분법 전면개정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에는 예비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나,⁸⁾ 독일통일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중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초에 다시금 연방과 주에 개인신분법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되었고, 동 위원회에서 다른 행정분야에서는 이미 전자매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신분사무소는 여전히 문서더미에 갇혀 있는바, 신분관련사무도 디지털시대에 맞게 전자화해야 한다는 기본컨셉을 마련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전자신분대장을 도입하고 기존의 문서대장의 운용방향을 규율하는 등 개인신분법을 전면 개정하는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관련기관들에게 입법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

방과 주의 이익단체, 교회와 기타 개인신분법개정과 관계가 있는 기관들에게 송부되었고, 이들 단체들의 의견들을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별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수정된 전체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2005년 초에 야 비로소 개정안이 확정되었다.⁹⁾ 이 확정된 개정안은 곧바로 연방정부로 송부되었고, 연방내각에서 이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결의된 후, 2005년 8월 12일에 연방수상에 의하여 연방참의원의 의장에게 정부안이 송부되었다.¹⁰⁾ 이 정부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14일에 연방참의원은 48개의 변경제안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결의하였다.¹¹⁾ 이 의견서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후, 2006년 7월 15일에 정부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고,¹²⁾ 3차례에 걸친 독회를 거쳐서 12월 15일에 결의권고안의 형태로 통과되었다.¹³⁾ 이어서 정부안은 다시금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 12월 15일에 연방참의원도 통과하였고,¹⁴⁾ 2007년 2월 23일에 개인신분법개정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¹⁵⁾ 개정법은 개인신분법개정을 위한 법

7) 1951년 1월 15일의 법률(BGBl. I, S. 57) 그리고 1957년 5월 18일의 법률(BGBl. I, S. 518)에 의하여 각각 제1차 개정과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개정의 주요논점은 과거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 사건들의 공증과 가족부의 규율이었다. 그리고 1970년 7월 17일의 법률(BGBl. I, S. 1099)과 1974년 8월 5일의 법률(BGBl. I, S. 1857)에 의하여 제3·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개정의 주요논점들은 개인신분증서를 가지고 있는 조국을 잃은 외국인, 난민들 그리고 망명자들에 대한 규율, 베를린에 있는 제1 신분사무소에 의한 외국에서의 출생 및 사망사건에 대한 공증 등이었다. 2007년 개정은 개정회수로는 제5차 개정에 해당하지만, 개인신분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개정이다.

8) 그 과정에 대하여는 Bornhofen, Heirichs, Die Reform des Personenstandsrechts, StAZ 1996, S. 161, 161 f. 참조.

9) 그 과정에 대하여는 Bornhofen, Heinrichs, Das Gesetz zur Reform des Personenstandsrechts, StAZ 2007, S. 33, 34 참조.

10) BR-Drucksache, 616/05.

11) BR-Drucksache, 616/05 (Beschluss).

12) BT-Drucksache, 16/3309.

13) BT-Plenarprotokoll, 16/63, 6249 B.

14) BT-Plenarprotokoll, 829, 401 A.

15) Das Gesetz zur Reform des Personenstandsrechts (Personenstandsrechtsreformgesetz -PStRG) vom 19.2.2007 (BGBl. I, S. 122).

를 제5편 제2항에 따라서-일부조문을 제외하고는¹⁶⁾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III. 2007년 개정법의 주요내용

1. 개인신분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의 신설

1875년의 제국법률에서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개인신분(Personenstand)이라는 용어가 법문에 반복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이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개정법에서 제1조 제1항¹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신분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조 [개인신분, 신분사무소의 임무] (1) 이 법의 의미에서의 개인신분은 그의 성명을 포함하여 법질서 내부에서 가족법의 징표들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지위이다. 개인신분은 출생, 혼인체결,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사망에 관한 정보자료 및 이와 결합된 가족법상 그리고 성명법상의 사실들을 포함한다.

그동안 판례와 문헌에서는 개인신분이라는 개념을 다소 상이하게 해석했었다. 가령 판례에서는 “개인신분은 한 개인의 다른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법적인 관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었고,¹⁸⁾ 문헌에서는 개인신분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아니하고, “개인신분에는 법률에 따라서 개인신분부에 등록된 모든 진술들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 하에서 개인신분부에 기재되는 성명이 가족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생활동반자는 개인신분에 속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법문에 반영하여 제1문에서는 추상적으로 개인신분과 가족법과의 관련을 기술하고 있고, 제2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장등록에 중요한 전산정보자료들을 예시함으로써 이 개념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²⁰⁾ 동규정의 신설로 성명, 생활동반자가 개인신분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고, 개인신분의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신분사무와 기타의 행정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²¹⁾ 문제점도 해결되었다.

16) 개인신분법 개정을 위한 법률 제5편 제1항에 따르면 제67조 제4항,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1항 및 제2편 제13항 제4호 § 82a 제6항 내지 제8항은 공포일 익일(즉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17) 본고에서 법령의 언급 없이 인용된 조문들은 개정 개인신분법상의 조문들이다.

18) RGSt 10, 87; RGSt 13, 130; RGSt 19, 406; RGSt 21, 411; RGSt 25, 189; RGSt 41, 302.

19) Hefting, Reinhard / Gaaz, Berthold, Personenstandsrecht mit Familienrecht und internationalem Privatrecht, Kommentar, Band 1/1, PStG-Kommentar (Loseblatt), Stand: 40. Lieferung 09. 2006, Frankfurt/Main, 2006 (Hefting / Gaas, PStG라 인용), Hefting / Gaas, PStR Bd. 1/1 § 1 Rn. 4; Peiffer, Gerd / Strickert, Hans-Georg, Personenstandsgesetz, Kommentar, Berlin, 1961 (Peiffer / Strickert, PStG라 인용), Pfeiffer / Strickert, PStG § 1 Rn. 3.

20) BT-Drucksache, 16/1831, S. 42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1 Abs. 1).

21) Hefting / Gaas, PStR Bd. 1/1 § 1 Rn. 4; Pfeiffer / Strickert, PStG § 1 Rn. 3.

2. 신분사무소라는 명칭의 신설

개정법에서는 다른 법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법률 규정의 예에 따라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임무와 관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²²⁾ 특히 ‘신분사무소(Standesamt)’라는 공식명칭이 처음으로 법문에 등장하였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개인신분, 신분사무소의 임무] (2) 주법에 따라서 개인신분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청들(신분사무소들)은 이 법에 따라 개인신분을 공증한다; 이들은 혼인의 체결과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시에 협력한다.
(3) 신분사무소들은 연방법 혹은 주법에 의하여 그에 귀속된 기타의 임무들을 수행한다.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으로 신분사무소가 개인신분에 대한 공증의 권한을 가지는 관청이며, 이들이 보편적으로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무들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다른 행정분야에서 중성적인 표현의 관청명들(예컨대, 청소년사무소, 경찰서)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신분의 등록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하여 신분사무소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²³⁾

3. 신분공무원의 임무

신분공무원이 개인신분을 공증한다는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개정법이 동일하나, 개정법에서는 제2조에 신분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의 사무범위, 사무의 독립성 그리고 교육과 인성에 따른 임명 등을 법정함으로써 신분공무원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신분공무원들] (1) 개인신분을 위한 공증과 인증은 신분사무소에서 단지 이를 위하여 임명된書記들(신분공무원)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개인신분증서와 기타의 공적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공증인들, 기타의 서기들 혹은 그밖의 공증과 인증을 위한 기관들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그들의 서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공무원들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단지 교육과 인성에 따라서 적합한 공무원들과 직원들만이 신분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4) 신분공무원이라는 직무표시는 여성 혹은 남성형으로 사용된다.

진술한 바와 같이 독일개인신분법의 역사는 교회로부터 국가로 신분등록사무를 이관하는 데에서 시작하는바, 개인신분법 제정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분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개인신분대장 등에 개인신분을 공증하는 것이다. 통상 ‘공증한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입증수단으로서 공

22) BT-Drucksache, 16/1831, S. 34 (Amtliche Begründung A II 1 a).

23) BT-Drucksache, 16/1831, S. 34 (Amtliche Begründung A II 1 a).

적인 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개인신분대장에의 공증은, 공증권한이 있는 신분공무원(제2조 제1항)이, 신고, 명령, 의사표시, 통지 그리고 신분사무소의 독자적인 조사 및 다른 개인신분대장의 등록, 개인신분증서 혹은 기타의 공적인 증서에 기하여(제9조 제1항), 개인신분과 관계된 모든 사실들, 가령 출생, 사망, 혼인, 생활동반자관계 등을 출생대장, 사망대장, 혼인대장, 생활동반자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은 그 공증대상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바, 개인신분대장에의 공증은 혼인체결,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출생과 사망 그리고 등록과 관계된 사람의 개인신분에 대한 기타의 진술들을 증명한다(제54조 제1항 참조). 그렇지만 공증은 권리를 근거지우는 효과를 가지지는 아니하므로, 공증된 사실의 오류에 대한 입증은 언제나 허용된다(제54조 제3항 참조).

현행법상으로는 신분공무원이라는 표현은 남성형만 있었기 때문에, 신분공무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불문하고 공증 등은 무조건 신분공무원(‘Der Standesbeamte’)이라는 직무표시 하에 작성되어야만 했다.²⁵⁾ 그러던 것이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1996년 예비초안 제53조 제3항에²⁶⁾ 여성신분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도입되었고,²⁷⁾ 2007년 개정법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4. 사건별 등록시스템 등기부

독일개인신분법은 1875년 제국법률이라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출생, 혼인, 사망 등 ‘사건별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다만, 개인신분을 등록하는 공적인 등록부의 명칭 그리고 종류에는 다소 변화가 있어 왔다. 가령 1875년의 제국법률에서는 출생대장, 혼인대장, 사망대장이라는 3가지의 신분대장(Standesregister)이 법정되어 있었다.²⁸⁾ 이에 비하여 1937년 개인신분법에서는 제국법률상 臺帳(Register)이라는 명칭을 簿(Buch)로 변경하였고, 가족부, 출생부, 사망부라는 3가지의 개인신분부(Personenstandsbuch)를 두고 있었다.²⁹⁾ 동법에서는 제국법률에서의 혼인대장 대신에 가족부가 등장하는데, 이 가족부는 종래의 혼인대장의 역할을 다소 확대한 것으로서,³⁰⁾ 1957년 개정법 이래 현행법까지 존속되고 있는 가족부와 혼동을 막기 위하여 통상 ‘구 가족부’라고 일컬어진다. 이 구가족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혼인체결시에 잡구에 혼인사실을 공증하게 되고, 을구에는 개별적인 가족구성원들과의 친족관계들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었다. 입법이유에서는 가족부는 혼인공증에 기여함은 물론 개개인들에게 가족의 생계 나아가 독일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하게 심어주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³¹⁾ 이는 그 당시의 사회상,

24) Hepting / Gaas, PStR Bd. 1/1 § 1 Rn. 7; Pfeiffer / Strickert, PStG § 1 Rn. 4.

25) Hepting / Gaas, PStR Bd. 1/1 § 1 Rn. 5.

26) [예비초안 제53조] (3) 신분등록공무원의 직무가 여성에 의하여 행사되는 경우에는, 그녀는 “여성신분공무원”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27) Bornhofen, StAZ 1996, S. 161, 169.

28) 제12조: “신분공무원에 의하여 출생대장, 혼인대장, 사망대장의 3가지의 신분대장이 처리된다.”

29) 제1조 제2항: “신분공무원들은 가족부, 출생부 그리고 사망부를 처리한다.” 이 당시에는 가족혈통부(Familienstammbuch) 혹은 가족의 혈통부(Stammbuch der Familie)도 작성되었으나, 이는 공적인 개인신분부는 아니었다.

30) Hepting / Gaas, PStR Bd. 1/1 § 1 Rn. 14; Peters, Ernst, Personenstandsrecht, Frankfurt/Main, 1949, S. 26 f.; Schütze, a.a.O., S. 60.

즉 민족사회주의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보아야 할 것이다. 1957년 개정법부터 현행법에 이르기까지는 혼인부, 가족부, 출생부, 사망부라는 4가지의 개인신분부가 작성되고 있다.³²⁾ 그리고 2007년 개정법에서는 다시금 제국법률상의 명칭인 ‘대장’으로 복귀하여 개인신분대장(Personenstandsregister)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대장이 새로이 추가된 반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족부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혼인대장, 생활동반자대장, 출생대장, 사망대장이라는 4가지의 대장에 개인신분사건들을 공증하게 된다.

5. 가족부의 폐지

가족부의 폐지는 금번 개정의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1996년 예비초안을 마련할 당시에 두 개의 주에서, 가족부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가족혈통부’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통지과정(예컨대, 출생부부터 가족부까지)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가족부폐지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다른 주들에서는, 외국에서 체결된 혼인에 기초하여 형성된 대다수의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부가 배우자들의 혼인체결과 그들의 자녀의 출생에 대한 유일한 증명원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가족부의 존치에 찬성했고, 그 결과 예비초안에는 가족부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³³⁾

이와는 달리 개정법에서는 전격적으로 가족부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간 약 400,000개의 가족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하였다.³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관련서류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보관 공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서류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족부가 더 이상 가족관계를 제대로 공시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³⁵⁾ 현행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부는 혼인당사자들이 신분공무원의 면전에서 혼인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그 혼인을 주관했던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바, 가족부에 공시되는 가족은 법률혼으로 성립된 가족으로 한정된다. 이 가족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법률혼을 체결한 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이른바 ‘통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므로, 가족부는 이러한 가족들만을 공시하는 개인신분부이고, 기타의 비통상적인 가족들이 가족부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독일사회가 변화하여 종래 소수의, 비통상적인 가족 유형이라고 여겨졌던 가족들, 가령 사실혼관계에 있

31) Amtliche Begründung zum Personenstandsgesetz vom 3.11.1937, II a).

32) 제1조 제2항: “신분공무원은 혼인부, 가족부, 출생부 그리고 사망부(개인신분부)를 처리한다.”

33) Bornhofen, StAZ 1996, S. 161, 169.

34) 비용문제에 대하여는 BT-Drucksache, 16/1831, S. 40 ff. 참조 (Amtliche Begründung A V).

35) BT-Drucksache, 16/1831, S. 32 (Amtliche Begründung A I 3).

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내지 싱글인 부모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³⁶⁾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혼인체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형성된 가족들을 위해서는 가족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는바, 가족부가 실질적 가족관계를 공시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혼인부에는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체결사실만을 공증하고, 배우자의 기타의 신분변경은 가족부에서 공증되었으나, 가족부의 폐지로 종래 가족부가 담당해 왔던 기능은 혼인대장에 귀속될 것이다. 개정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① 배우자들의 사망, 그들의 사망선고 혹은 법원에 의한 사망시간의 확정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취소, ② 혼인의 해제 혹은 이혼, ③ 혼인의 불성립의 확정, ④ 배우자들의 개명, ⑤ 기타의 모든 개인신분의 변경(혼인등록이 되어 있는 진술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함) 및 등록된 종교소속성의 변경 또는 말소 (당해 배우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 한 함), ⑥ 정정의 경우에는 혼인등록에 후속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후속공증사항들을 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³⁷⁾

6. 문서신분대장에서 전자신분대장으로의 변경

개정법에 따르면 개인신분대장은 물론이고 자연재

해 등으로 말미암은 등록전산정보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³⁸⁾ 작성되는 보전대장(Sicherungsregister)도 현재의 문서대장에서 전자대장으로 대체된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75조에서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월 1일까지 전자대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신분사무소들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신분사무소들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종래와 마찬가지로 문서대장에 개인신분사건들을 공증하고, 차후에 신분사무소가 설비를 모두 갖추게 되면, 경과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공증들을 전자대장에 수용하게 된다. 결국 전자대장으로의 전환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종래의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이미 전자서류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행정분야에서의 경험들(가령 등기부의 전산화)과 전자신분등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신분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자료들만을 별도로 모아 전자신분대장에 보관하게 되면, 문서대장의 경우에서 보다 오히려 등록전산정보자료들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경감된다는 사실도 장점으로 작용하였다.³⁹⁾ 이처럼 문서대장을 전자대장으로 교체함에 있어서 행정의 간이화 등 다른 요소들보다 자

36)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녀를 둔 가족의 74%는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졌고, 26%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혹은 싱글인 모 또는 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부양법 분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는바, 현재 이러한 변화된 가족상을 고려한 부양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의 부양법 개정안 참조: BR-Drucksache, 253/06.

37) BT-Drucksache, 16/1831, S. 45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16).

38) BT-Drucksache, 16/1831, S. 43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4).

39) BT-Drucksache, 16/1831, S. 33 (Amtliche Begründung A I 3 b), S. 34 f. (Amtliche Begründung A II 1 b). S. 43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3 Abs. 2).

료보관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 진 것은, 20세기에 들어 2차례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중요한 국가문서들을 거의 모두 손상했던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에 비하여 기타의 증거력 있는 서류들은 一件書類들(Sammelakten)로 분류되어 별도로 보관하게 되므로, 유사시에 이러한 서류들로부터 대장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 ‘일건서류’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단지 신분공무원들과 그들의 감독관청을 위한 사무처리지침⁴⁰⁾에서 규율되고 있었다. 가령 지침 제44조 제3항에서는 공증을 이유로 취득된 모든 서류들은 일건서류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에서는 “신분공무원은 단지 개인신분사건의 공증을 위하여 취득된 진술들과 서류들에 관하여, 일건서류들의 열람을 보장하거나 일건서류들로부터 초본 혹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신분부들의 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들(현행법 제86조)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침의 내용의 일부를 법률에 수용하여, 제6조에서는 “개인신분대장의 개별적인 공증과 관계된 서류들은 특별한 서류(일건서류)로 보관된다”고 법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3문,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제65조 제1항 제2문에서는 일건서류들의 이용도 개인신분대장의 이용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7. 등록의 계속

(1) 개인신분대장의 계속기간

현행법상으로는 지침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신분등록부들은 신분등록소에서 계속해서 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러한 무제한적인 등록 계속의 원칙을 포기하고, 제5조 제5항에 법정되어 있는 기간(혼인대장과 생활동반자대장은 80년, 출생대장은 110년, 사망대장은 30년)의 경과 후에는⁴¹⁾ 문서법적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55조 제3항에서는 계속기간의 경과 후에는 개인신분대장들로부터 어떠한 신분증서도 더 이상 교부될 수 없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문서법적인 일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등본이 교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등본들은 개인신분대장에의 공증이나 신분증서와 같은 고도의 증명력은 없지만, 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증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⁴²⁾

(2) 문서보관소에 의한 보관

개정법 제5조 제5항에 법정된 계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신분대장, 보전대장 그리고 일건서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서 문서보관소에서 보관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신분대장 등을 계속기간 동안만 신분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법정한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 하나는 국가에서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한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해만 가

40) Achtzehn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Änderung der Dienstanweisung für die Standesbeamten und ihre Aufsichtsbehörden - DA- (18, DA-ÄndVwV) vom 14. April 2005. 이하에서는 “지침”이라 인용한다.

41) 이 계속기간의 경과 후에는 -대장이 즉시 문서보관소로 송부되는지 혹은 우선 신분사무소에 남아있게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대장에 개인신분사건이 더 이상 등록되지 아니한다: BT-Drucksache, 16/1831, S. 43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5).

42) Bornhofen, StAZ 2007, S. 33, 37.

는 서류다미들로부터 신분공무원들을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서류들을 전문적인 문서보관기관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⁴³⁾ 이와 더불어 문서보관소에서 통합적으로 신분관련서류들을 보관하게 되면,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이들 서류들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게 된다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⁴⁴⁾

8. 신분공무원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신분정보 자료들의 제한

모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6년 예비초안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개정에서도 신분공무원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자료들을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한 개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동안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자들은 그들의 활동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신분부에 등록되는 인

적사항들을 공증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으로 요구를 해 왔고,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의 법률과 행정의 단순화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혼인부에 배우자들의 직업과 종교 및 증인들의 직업과 연령을 기재하는 것(현행법 제11조⁴⁵⁾), 출생부에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인)의 직업 및 부모의 종교를 기재하는 것(현행법 제21조⁴⁶⁾) 그리고 사망부에 망인(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인)의 직업 및 망인의 종교를 기재하는 것(현행법 제37조⁴⁷⁾)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⁴⁸⁾ 이러한 그 동안의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개정법에서는 현행법에 비하여 개인신분대장의 등록사항들이 많이 감소하였다.

제15조 [혼인대장에의 등록] (1) 혼인대장에는 혼인체결에 이어 1. 혼인체결의 날짜와 장소, 2. 배우자들의 이름과 성, 그들의 출생지

43) BT-Drucksache, 16/1831, S. 33 (Amtliche Begründung A 1 3 b), S. 35 (Amtliche Begründung A II 1 b), S. 44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7 Abs. 3).

44) Bornhofen, StAZ 2007, S. 33, 37.

45) **현행법 제11조 [혼인부에의 등록]** (1) 혼인부에는 다음 사항들이 기록된다. 1. 혼인체결자들의 이름과 성, 그들의 직업과 주소지, 그들의 출생지와 출생일 및 그들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법적으로 소속되거나 혹은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 종교공동체 혹은 세계관공동체, 2. 혼인체결시에 출석한 증인들의 이름과 성, 그들의 연령, 직업 및 주소지, 3. 혼인체결자들의 의사표시, 4. 신분공무원의 진술.

46) **현행법 제21조 [출생부에의 등록]** (1) 출생부에는 1. 부모의 이름과 성, 그들의 직업과 주소지, 그들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법적으로 소속되거나 혹은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 종교공동체 혹은 세계관공동체 및 그들이 독일인이 아니고 그들의 외국국적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 2. 출생장소, 출생일과 시간, 3. 자녀의 성별, 4. 자녀의 이름과 성, 5. 신고자의 이름과 성, 그의 직업과 주소지가 기재된다.

47) **현행법 제37조 [사망부에의 등록]** (1) 사망부에는 1. 망자의 이름과 성, 그의 직업과 주소지, 그의 출생지와 출생일 및 신고자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법적으로 소속되거나 혹은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 종교공동체 혹은 세계관공동체, 2. 배우자의 이름과 가족성 혹은 망자가 혼인을 하지 아니했다는 표시, 3. 사망장소 및 사망일, 시간, 4. 신고자의 이름과 성, 그의 직업과 주소지가 기재된다.

48) Bericht und Empfehlungen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für 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 des Bundes zur Entlastung der Unternehmen, Bürger und Verwaltungen von administrativen Pflichten vom Oktober 1994.

와 출생일 및 일방 배우자의 소망에 따라 공법상 사단인 종교공동체에의 법적인 소속성, 3. 혼인체결 후에 가지게 되는 배우자들의 성이 공증된다.

제17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공증]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제11조와 제1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생활동반자법 제23조는 그대로 존속한다.

제21조 [출생대장예의 등록] (1) 출생대장예는 1. 자의 이름과 성, 2. 출생장소 및 출생의 일, 시와 분, 3. 자의 성별, 4. 부모들의 이름과 성 및 부모의 일방의 소망에 따라 공법상 사단인 종교공동체에의 법적인 소속성이 공증된다.

제31조 [사망대장예의 등록] (1) 사망대장예는 1. 망자의 이름과 성, 그의 출생지와 출생일 및 신고자의 소망에 따라 공법상 사단인 종교공동체에의 법적인 소속성, 2. 망자의 최후의 주소지와 가족상황, 3. 사망장소 및 사망의 시간과 분이 공증된다.

위에서 언급된 법률규정에서 보여주듯이 개정법 하에서는 직업과 주소지, 신고자의 성명과 직업 등

은 더 이상 개인신분대장예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반면에 종교관련 진술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사건본인(혼인대장, 생활동반자대장의 경우), 부모의 일방(출생대장의 경우) 혹은 신고자(사망대장의 경우)가 원하는 경우에는⁴⁹⁾ 계속해서 대장에 기재되게 된다. 이처럼 임의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종교관련진술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대장에 공시되는 것은, 개인신분등록과 관련하여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적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예라 하겠다. 아울러 독일은 아직도 종교세를 부과하는 국가이므로, 종교에 관한 진술은 교회는 물론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대장의 이용

개정법에서는-현행법에서 단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제61조 내지 제66조에서 개인신분대장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1) 이용을 위한 일반규정들

개정법에서는 제61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제61조[이용을 위한 일반규정들] (1) 제62조 내지 제66조는 제5조 제5항에서 확정된 기한의 경과시까지 신분사무소에서 처리된 개인

49) 가령 혼인대장에 종교에 관한 등록을 위해서는 혼인당사자들이 각각 신분공무원의 면전에서 자신의 종교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방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교회 등은 공법상 사단의 형식을 가지거나 그의 존재가 신분공무원에게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체결자 스스로 그러한 공동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Hepting / Gaas, PStR Bd. 1/1 § 11 Rn. 19).

신분대장들과 일건서류들에 적용된다. 이용은 하나의 대장등록으로부터 개인신분증서의 발급, 하나의 대장등록으로부터의 정보와 하나의 대장등록의 열람 및 보다 많은 대장등록들의 검색이다. 여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건서류들의 이용도 포함된다.

(2) 제5조 제5항에 법정된 개인신분대장들과 일건서류들의 처리를 위한 기한의 경과 후에는, 문서법의 규정들이 이용을 위하여 표준적이다.

제61조에 따라서 인정되는 이용방식에는 현행법상의 방식인 열람, 검색, 개인신분증서의 발급 외에 ‘정보제공’도 포함되어 있다.

‘열람’이라 함은 어떤 한 개인신분부에 있는 특정된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등록들을 살펴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검색(Durchsicht)’은 -예컨대, 계보학적인 연구의 필요에서- 특정된 등록을 찾기 위하여 혹은 여러 개의 등록들 또는 여러 권의 등록부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인신분부를 검사하여 찾아보는 것을 의미한다.⁵¹⁾

‘개인신분증서의 발급’은 가장 일반적인 개인신분부의 이용방식이다. 개정법상 신분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는 신분증서들은 ① 모든 개인신분대장으로부터 인증된 대장등본, ② 혼인대장으로부터 혼인증서(제57조), ③ 생활동반자대장으로부터 생활동반자증서(제58조), ④ 출생대장으로부터 출생증서(제59조), ⑤ 사망대장으로부터 사망증서(제60조), ⑥ 사망선고집(死亡宣告集)으로부터 인증된

등본의 6가지로 한정되어 있다(제55조 제1항). ‘정보제공’은 개별적인 개인신분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인들에 의한 이용

제6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인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2조 [증서발급, 정보, 열람] (1) 개인신분증서들은 신청으로 대장등록과 관계된 자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 생활동반자들, 존속들과 비속들에게 발급된다. 기타의 자들은, 그들이 법적인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는, 개인신분증서들의 발급청구권을 가진다. 출생대장 혹은 사망대장에 있어서, 자 혹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만 16세 이상인 사람들은 신청권이 있다.

(2) 하나의 대장등록으로부터의 정보와 하나의 대장등록의 열람 및 일건서류들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이것들의 열람에는 제1항이 준용된다.

(3) 개인신분대장들의 처리를 위하여 확정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은, 최후에 사망한 관계당사자의 사망 이래 3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 이미 허용된다. 관계당사자들은 출생대장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 혼인대장의 경우에는 배우자들과 그리고 생활동반자대장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들이다.

50) Hepting / Gaas, PStR Bd, 1/2 § 61 Rn. 11.

51) Hepting / Gaas, PStR Bd, 1/2 § 61 Rn. 13.

신설된 제1항 제2문에서는 자(子)의 형제자매가 출생대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사망대장의 이용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건을 완화하여 단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법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실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다.⁵²⁾ 이러한 완화된 이용요건은 역시 신설된 제3항에 따라 최후에 사망한 관계당사자의 사망 이래 3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역시 신설된 제1항 제3문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6세 이상인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16세라는 연령을 법정한 것은 독일민법 제1303조 제2항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⁵³⁾ 동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가 아직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만 16세에 달하였고 그의 장래의 배우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예외적으로 혼인적령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의 이용

제63조에서는 입양, 성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 신분대장 등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3조 [특별한 경우들에 있어서의 이용] (1) 자(子)가 입양된 경우에는, 제62조와는 상이하게 출생등록으로부터 인증된 대장등본은 단지 입양자들, 그들의 부모, 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만 16세 이상인 양자 본인에게 발급

된다. 이 제한은 자의 사망으로 소멸되고, 민법 제1758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떤 사람의 이름이 1980년 9월 10일의 성전환자법(BGBI. I, S. 1654)에 근거하여 변경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다른 성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2조와는 상이하게 단지 사건본인 자신에 대해서만 출생등록으로부터 개인신분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그 자의 사망으로 소멸되고, 성전환자법 제5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과 결합하여 제10조 제2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하나의 대장등록으로부터의 정보제공과 하나의 대장등록의 열람 및 일건서류들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이것들의 열람에 준용된다.

제63조 제1항과 제2항은 현행법 제61조 제2항과 제3항에 상응하는 규정이고, 제3항은 신설된 규정이다.

(4) 재제표시

신설된 제6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제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4조 [재제표시들] (1) 신분공무원에게, 어떤 사람에게 출생증서의 발급에 의하여 혹은 하나의 출생등록으로부터의 정보 혹은 하나의

52) BT-Drucksache, 16/1831, S. 52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62).

53) BT-Drucksache, 16/1831, S. 52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62).

출생등록의 열람에 의하여 생명, 건강, 사적 인 자유 혹은 이와 유사한 보호를 요하는 이익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정당화하는 사실들이 알려진 경우에는, 그의 신청으로 이 등록에 3년 동안 재제표시가 기재된다. 재제표시는 제1문의 요건들 하에서 갱신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재제표시가 기재된 경우에, 현존하는 입증근란의 제거를 위하여 혹은 제3자의 기타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신분증서들이 발급되거나 하나의 개인신분등록으로부터의 정보 혹은 이에 대한 열람이 보장될 수 있다; 제50조 내지 제53조는 준용된다.

(2) 신분사무소에 2001년 12월 11일의 증인보호법(BGBI. I S. 3510)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증인보호소의 요보호자의 개인관련정보들에 대한 재제신청이 송달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분등록에 재제표시가 기재된다. 이 등록으로부터의 개인신분증서들의 발급은, 단지 근거가 적시된 예외적인 경우들에만 증인보호소의 승인으로 허용된다. 모든 이용신청은 증인보호소에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증인보호소가 신분사무소에 개인신분등록의 재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재제표시는 말소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등록으로부터의 정보와 등록의 열람 및 일건서류들로부터의 정보와 이것들의 열람에 준용된다.

제1항에서는 특정한 사안(특히 생명, 건강, 인적 인 자유를 위하여 위험한 경우)의 경우에, 대장에 3

년 동안 재제표시를 할 수 있고, 갱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그동안 증인보호법에 근거하여 지침 제68조에서 규율하고 있던 내용을 법률에 수용한 규정이다.

(5) 관청과 법원에 의한 이용

제6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청과 법원의 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65조 [관청들과 법원들에 의한 이용] (1) 관청

들과 법원들에게, 그들의 권한에 놓여 있는 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에 있어서는, 신청으로 개인신분증서들이 발급되고 하나의 대장등록으로부터 정보 혹은 하나의 대장등록의 열람이 보장된다. 동일한 것이 일건서류들로부터의 정보와 이것들의 열람에도 적용된다. 관청들과 법원들은 그 목적을 적시해야 한다. 그들은 제공의 허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내국에 있는 공공법인인 종교공동체들에게, 신청이 그들 종교공동체의 구성원과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제1항의 요건 하에서 개인신분증서들과 하나의 개인신분대장으로부터 정보들이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혼인증서는 일방 배우자만이 당해 종교공동체에 속하고 배우자들이 발급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

(3) 내국에 있는 외국의 외교·영사대표부들에게, 신청이 그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가의 국민들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제1항의 요건 하에 개인신분증서들과 하나의 개인신분대장으로부터 정보들이 발급될 수 있다. 사건본인의 경우에, 조국을 잃은 외국인 혹은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조약의 의미에서

의 외국의 난민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신분공무원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대장의 이용이 금지된다.

제1항에서는-현행법과 마찬가지로-관청과 법원이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 제4문을 신설하여 그 정보제공의 허용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은-일반적인 직무협조의 원칙에 상응하여-신청을 하는 측에 있고, 신분사무소는 신청기관의 사무의 범위에서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⁵⁴⁾

제2항에서는 내국공공법인인 종교공동체의 개인 신분대장이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공동체의 개인신분부 이용과 관련해서, 특히 종교가 상이한 배우자들의 혼인증서발급의 경우에, 어느 종교공동체에 그 신청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⁵⁵⁾ 개정법에서는 배우자들이 증서발급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양 종교공동체가 모두 혼인증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6) 학문적 목적을 위한 이용

제66조에서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이용에 관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6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이용] (1) 대학들, 학문적 연구를 하는 기타의 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게,

1. 이것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익명화된 전산정보 자료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익명화가 비통상적으로 많은 비용과 결부된 경우 그리고
3. 연구과제의 수행에 대한 공적인 이익이 이용배제에 대한 사건 본인의 요보호이익을 상당히 능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개인신분대장으로부터의 정보 혹은 하나의 개인신분대장의 열람 및 개인신분대장들의 검색이 보장될 수 있다. 동일한 것이 일건서류들로부터의 정보와 이것들의 열람에 적용된다.

(2) 제1항에 따른 개인신분대장들의 이용은, 수령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 정보보호법적인 규정들에 따라서 전산정보자료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술적·조직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용은 연방 또는 주의 최고주무관청 혹은 이 특정된 기관의 연방 또는 주의 최고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한다. 승인은 수령자, 개인신분등록들의 이용방식, 관계자들의 범위와 연구목적을 적시해야 한다; 승인은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54) BT-Drucksache, 16/1831, S. 75 (BReg-Gegenüberung zu Nr. 26) 참조.

55) 종교공동체의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의 기록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Hepting / Gaas, PStR Bd. 1/2 § 61 Rn. 25.

(3) 연방 혹은 주의 최고주무관청 혹은 이 특정된 기관의 연방 또는 주의 최고주무관청의 승인으로 제1항에 따라서 이용된 전산정보자료들은 동일한 요건 하에 다른 연구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된다거나 계속 전달될 수 있다.

(4) 연구목적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1항과 제3항에 따라서 취득된 전산정보자료들은 익명화되어야 한다. 익명화되기까지는 특정된 혹은 특정가능한 사람의 인적 관계들 혹은 물적 관계들에 대한 개별적 사항들로 정렬될 수 있는 징표들은 별도로 저장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연구목적이 이를 필요로 하는 한에 있어서만, 개별적인 사항들과 결합될 수 있다. 징표들은 연구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삭제되어야 한다.

(5) 제1항과 제3항에 따라서 취득된 전산정보자료들의 공개는 단지

1. 사건 본인들, 그들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그들의 배우자들과 비속들이 동의를 한 경우 혹은 2. 현대사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서술을 위하여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개는 제2항에 따라서 이용승인을 했던 연방 혹은 주의 최고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개인신분대장 등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신분대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개인신분대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⁵⁶⁾ 제66조를 신설하였고, 그럼으로써 이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독일 개인신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2007년 개정법의 주요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5월에 독일의 개인신분법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약칭)이 제정되었고,⁵⁷⁾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률은 그 역사적 배경은 상이하지만, 개인신분을 공적인 대장에 공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하에서는 독일의 개인신분법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우선 ‘절차면’에 있어서 독일개인신분법이 무려 20년 이상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개정된 것에 비하면, 우리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상당히 단기간 내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입법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참여 등 의견수렴과정이 다소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개인신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것은 사건본인인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따라서 차후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

56) BT-Drucksache, 16/1831, S. 36 (Amtliche Begründung A II 2 c), S. 53 (Amtliche Begründung B Art. 1 Zu § 66).

57)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는, 보다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들에 입법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독일개인신분법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신분대장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절을 두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단지 제13조 한 조문에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동 규정에서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고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독일법의 경우를 참조하여 이용주체, 이용방법, 이용요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신상정보보호의 차원에서 개인신분대장예의 기록사항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증명서에는 필요 이상의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가족관계등록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 그 기록사항을 가족관계의 공시와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법제정보 신청 안내

제공 대상 정보

- ① 각국별 법령 제정, 개정정보, 입법적 쟁점, 제정,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 ② 국내 현안에 대한 각국별 법제현황 및 내용
- ③ 그 밖에 정부입법정책수립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

신청 방법

신청대상 국가, 법령명 및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우편 ·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해 주십시오.

접수처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팀

Tel : 02-3498-8823, Fax : 02-579-0127, E-mail : foreignlaw@klri.re.kr

최신 외국법제정보 배부

신청기관에게는 익월 15일에 '최신 외국법제정보' 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 외국법제정보 신청서 작성례

구분	내용
신청기관 (팀/과명, 담당자명 기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 사무관
신청대상 국가	독일
신청대상 법령명	디자인보호법
신청대상 제도	디자인인증제도
관련 국내 입법정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 관련 -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관련

